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과 심사에 대한 연구

주 용 이*

目 次

I. 서 론	IV.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 중
II. 사실관계와 주요쟁점	대주주적격성 여부
III.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	V. 결 론
대주주 적격 여부	

I. 서 론

은행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에 의한 소유규제와 그 후 자격 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다. 더불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금융자본 지배와 그 반대의 경우인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금산분리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은행법은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관리·감독, 금산분리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들을 조문 내에 두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은행법은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핵심으로 하여 은행 소유규제를 규율한다.¹⁾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는 1982. 12. 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방지

■ 투고일자 : 2022년 11월 11일, 심사일자 : 2022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12월 20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문박사과정

1)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72면.

등을 위해 우리 은행법에 도입되었으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방지를 위한 금산분리원칙의 이행수단으로 활용된다.²⁾

이 글은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와 감독 그리고 금산분리원칙의 시행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론스타 사건을 통해 은행 소유와 관련하여 은행법에 규정된 법령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론스타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 대주주 적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이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 중 대주주적격성 여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시사점 등을 정리하며 글을 마친다.

II. 사실관계와 주요쟁점

1. 사실관계

론스타³⁾는 2003. 9. 4. LSF-KEB Holdings, SCA⁴⁾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1%(콜옵션 행사 시 65.23%)를 보유하기 위해 당시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9. 26.(금)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하였다.⁵⁾ 2007. 1. 26. 검찰이 론스타 등을 구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은행과 그 자회사인 외환카드 간 합병과정에서

2) 정순섭, 앞의 책, 69-72면.

3)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에 본사를 둔 미국계 폐쇄형 사모펀드이며, 론스타펀드III, 론스타펀드IV 등 다수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김희준, “론스타·한국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2012), 857-858면.) 우리 은행법은 법령 내에서 동일인을 기준으로 은행 소유와 그 이후 관리·감독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당시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LSF-KEB Holdings, SCA, 그 모회사인 론스타펀드IV 기타 동일인에 포함되는 개인 및 기관 등을 이 글에서 론스타라고 한다.

4) LSF-KEB Holdings, SCA는 외환은행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2003. 8. 21. 벨기에에서 설립된 론스타펀드IV가 100% 의결권을 보유한 자회사다.(김희준, 앞의 논문, 858면.; 서울행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4구합31484 판결.)

5) 김희준, 앞의 논문, 858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보도자료(2003. 9. 27.)

합병 상대회사인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감사설 유포 등의 혐의('2003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자)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공소사실 중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200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1심)⁶⁾은 250억 원 벌금형의 유죄를, 2008. 6. 24. 서울고등법원(2심)⁷⁾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1. 3. 10. 대법원은 2003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기적 부당 거래'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⁸⁾ 이후 2011. 10. 6. 서울고등법원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50억 원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하였다.⁹⁾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후 론스타가 7일 이내인 2011. 10. 13.까지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론스타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¹⁰⁾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론스타는 한도초과보유승인요건 중 은행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마목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하 '사회적 신용요건'이라고 하자)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2011. 10. 25. 은행법 제16조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3항에 따라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충족명령을 내렸다.¹¹⁾ 론스타는 외환카드사건 벌금형 확정으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고, 금융위원회는 2011. 11. 18.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에 의해 론스타에게 이후 6개월 동안 10% 초과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의결하였고, 론스타는 보유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전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였다.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고, 201. 5. 9. 중재판정부 구성을 완료하여, 한국 정부측과 론스타측은 본안 및 관할 관련 주장, 서증 및 증인 진술서·전문가 의견서 등을 서면 제출하였고, 1차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7고합71, 1272(병합)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806, 2011초기203, 2011초기204 판결.

10) 김희준, 앞의 논문, 862면.; 금융위원회,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확정에 따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보도자료(2011. 10. 17.); 금융위원회, "11.10.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관련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은행과 보도자료(2011. 10. 6.), 1면, <http://www.fsc.go.kr:8300/v/pDoUWimSjta> (2022. 5. 25. 확인)

11)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91면.

및 2차 심리기일 실시(증인·전문가 신문), 3차 심리기일 실시(관할 부분 변론), 제4차 심리기일 실시(최종변론)가 종료되었고, 전임 의장중재인이 사임하여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2020. 6. 23. 선정되었으며, 중재판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ICSID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¹²⁾

2. 주요쟁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보유 시 금융감독당국의 심사 쟁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51% 취득 시 대주주 적격 여부와 주식 보유 중 대주주적격성 유지 여부 2가지이다. 이때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은행법은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므로 취득 시와 보유중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Ⅲ.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 대주주 적격 여부

1. 은행법 시행령 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또는 8조(주식 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충족 여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국내법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은행법(법률 제6691호, 2002. 4. 27) 제15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5조에서 정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거나, 혹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법률 제6891호, 2003. 5. 29.,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신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었다. 먼저 론스타가 당시 구 은행법 시행령(대통령

12) 금융위원회,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금융위원회 은행과 등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2012. 5. 28.); 금융위원회, “론스타 관련 제4차 심리기일 종료”, 금융위원회 은행과 등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2016. 6. 4.); 금융위원회, “론스타 ISDS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금융위원회 은행과 등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2020. 6. 23.).

령 제17791호, 2002. 12. 5.) 제5조 별표 제5호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의 요건¹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¹⁴⁾ 다음으로 구 은행법 시행령 제8조(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제2항 조문 “... 금융산업의구조 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살펴보면, 해당법의 부실금융기관¹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 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조항 후미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13)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5조관련) 요건5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이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마.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14) 김용재, 은행법원론(제3판), 박영사, 2019, 102면.

15)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시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이하 “預金等 債權”이라 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金融去來에서 발생하는 借入을 제외한)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금융당국은 몇 가지 사유를 들어 인수를 승인하였다.¹⁶⁾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금융당국은(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구 은행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8조(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제2항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승인조항을 적용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를 승인하였고, 구체적으로 동항 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해당 법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법령 제8조 제2항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한도초과보유를 승인했다고 사료된다. 즉 구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 승인 조항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엄격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되었고¹⁷⁾, 론스타와 같은 외국인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아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구 은행법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2010. 11월 구 은행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개정 시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제 더 이상 해외의 적격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 같은 외국인이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사라졌다.¹⁸⁾ 현행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의 경우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3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 제6호(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에 따라 외국금융회사나 외국금융회사지주회사만이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되었다.¹⁹⁾

16)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신규 투자(10,750 억원)로 인해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어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후의 경영계획을 통하여 동행의 정상화와 한국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2003. 9. 27.));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매각에 적용된 승인조항을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 승인조항이 적용되었다고 하며, 외환은행 매각당시는 은행경영 부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잠재적 투자자도 론스타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고 하였다. 금융위원회, “한겨레신문 “정부, 론스타에 이중 잣대” 관련 해명”,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 보도 해명 자료(2006. 4. 18.), 1면.;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2020. 6. 23., 주 12), 1면.

17) 김용재, 앞의 책, 102면.

18) 상동.

19) 김용재, 앞의 책, 102-104면.

2.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국내법에서는 금산분리규정을 두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지분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시 산업자본(이하 비금융주력자라고 한다) 해당 여부가 논란이 되는데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주식 취득 승인 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론스타펀드Ⅳ(대주주),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회사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론스타로부터 확인자료를 받았다고 하며 론스타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외환은행 투자구조 설명자료에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불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²⁰⁾

V.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 중 대주주적격성 여부

1.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주주적격성 상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은행과 그 자회사인 외환카드 간 합병과정에서 합병 상대회사인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감사설 유포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재상고 포기로 유죄가 확정되었다.²¹⁾ 론스타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은행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5조 및 별표1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2011. 11. 8.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에 의해 론스타에게 이후 6개월 동안 10% 초과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의결하였고, 론스타는 보유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전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였다.

2.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 중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금융감독당국은 매 반기 기준의 정기 적격성 심사 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하여

20) 김희준, 앞의 논문 862-863면.

21) 상동, 862면.;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806.

왔다고 하며,²²⁾ 2010년 말 현재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펀드Ⅳ는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PGM이 매각된 2012년 1월 현재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동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사료된다고 하며,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그간의 비금융주력자 확인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의 문제 및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순히 법문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동 펀드에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한다.²³⁾

IV. 결 론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산분리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은행법에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소유 규제에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글은 은행업 진입과 이후 자격 유지에 대한 은행법령과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론스타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시 대주주 적격 여부와 주식 보유 중 대주주적격성 유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더불어 은행법은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므로 취득 시와 보유 중 각각의 경우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도 살펴보았다.

먼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당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당시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된 조항으로 현재는 폐기된 조항이다. 해당 시점에서는 적법하였으나 이후 당시 적용되었던 조항이 폐기된 점으로 보아 금융감독당국에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 조항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론스타의 주식 취득 승인 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펀드Ⅳ 등 동일인으로부터 확인자료와 설명자

22) 김희준, 앞의 논문, 862면.

23) 금융위원회, “론스타에 6개월내 주식 처분 명령”,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2011. 11. 18.), 5-6면.

료를 받았으며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 중 대주주적격성 유지 여부를 살펴보면 론스타의 201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론스타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론스타는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게 초과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의결하였고, 론스타는 보유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전량을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하였다. 주식 보유 중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매 반기 기준의 정기 적격성 심사 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 왔다고 하며 2010년 말 일시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PGM이 매각된 2012년 1월 시점에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사료된다고 한다.

론스타 사건은 폐지된 구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승인 조항으로 시발되었다고 판단된다. 명확한 법령 제정과 금융감독당국의 세밀한 적용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추후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 사건의 시사점에 유념하여 향후 유사사례에 대응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김용재, 은행법원론(제3판), 박영사, 2019.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김세진,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은행법연구』 제6권 제2호, 2013.

김희준, “론스타·한국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2012.

정혜련, “론스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사건에 대한 소고 - 론스타의 ISD 과정과 우리정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2012.

오현석, “투자의 적법성과 ISD 관할에 관한 연구 - 론스타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 법조협회 제69권 제1호, 2020.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보도자료(2003. 9. 27.)

금융위원회, “11.10.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관련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은행과 보도자료(2011. 10. 6.),

금융위원회,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확정에 따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보도자료(2011. 10. 17.)

금융위원회, “론스타에 6개월내 주식 처분 명령”,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2011. 11. 18.)

금융위원회,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금융위원회 은행과 등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2012. 5. 28.)

금융위원회, “론스타 관련 제4차 심리기일 종료”, 금융위원회 은행과 등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2016. 6. 4.)

금융위원회, “론스타 ISDS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금융위원회 은행과 등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2020. 6. 23.)

<국문초록>

론스타 사건은 폐지된 구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승인 조항으로 시발되었다고 판단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당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당시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된 조항으로 현재는 폐기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이후 폐기된 점을 보아 금융감독당국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였던 조항으로 판단된다. 명확한 법령 제정과 금융감독당국의 세밀한 법 적용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론스타, 동일인주식보유한도, 대주주적격성, 비금융주력자

<Abstract>

A Study on Lone Star's Large Stockholder Eligibility and Qualifications

Ju, Yong Yi^{*}

It is judged that the Lone Star case was initiated by the provision of exception approval in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which was abolished. At the time of Lone Star's acquisition of KEB stocks, it is believed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pproved Lone Star's takeover of KEB by applying the exception provisions of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at the time, which was an exceptional provision for foreigners at the time and is now abolished. Although the provision was legal at the time, it is judged that it was a provision that gave excessive discretion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s it was later repealed. It is thought that clear legislation and detailed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w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re necessary.

Keywords : Lone Star, Limits on Stock-Holding by Same Person,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of Stockholders Holding Stocks in Excess of Limit, Non-Financial Investor

* School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visyong@hanmail.net.